

## 성매매라는 범죄와 성노동자의 현실을 안은 성평등의 딜레마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1. '성매매'라는 '범죄'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함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도 제정되어 9월 24일 두 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두 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때,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불특정인'이라는 용어가 눈에 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을 상대로 동일한 행위를 할 때는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 흥미롭다.

[성매매 특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을 이전 법인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명을 보면 '윤락행위', 즉, 윤리를 떨어뜨려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애매한 규정에서 '성을 매매'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변천한 셈이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불특정인'과 '약속'하고 이를 댓가로 '성 행위'를 하는 것을 '윤리'로부터 떼어놓고 '행위' 자체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절대 다수가 여성들인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다 나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을 '구제' 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든 '윤락녀'라며 도덕적으로 매도하든 두 법은 모두 불특정인과/이 성행위를 하게하고 금품 등의 댓가를 받는 행위를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 2. 성노동자라는 현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2000년 9월 2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난 화재로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2002년 1월 29일, 같은 시 개북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난 화재로 열네 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놓여있다. 두 화재 사고 모두 사망자 발생 이유가 건물 출입구 등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 자체가 밖에서 잠겨 있어 대피가 불가능했던 점이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2002년에 반성매매법 제정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2002년 조배숙 의원<sup>1)</sup>이 발의한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3월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에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성을 판매하는 행위 혹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범죄라면 이 행위를 일로 삼은 이들은 범죄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다. 그런데 범죄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과정이 온전히 그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범죄자가 아니라 '구제대상'인 '구

1) 전북 익산 출신의 조배숙 의원은 검/판사 배경의 4선 의원으로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거쳐 2022년, 국민의힘 당 소속으로 전북 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했다.

조적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법에 따라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구제 대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도 어렵다. 권리란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체에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노동자들이 고용주인 사측이 일으킨 문제로 사고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지만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두 개의 사고를 예로 들어본다.

2014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8층 높이의 라나플라자 의류공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의류 공장은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뒤 6층에서 8층으로 불법 증축까지 된 건물에 있었다. 건물 붕괴사고로 현장에 있던 1,136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었고 2,500 명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라나플라자는 당시 H&M과 베네통 같은 소위 글로벌 의류브랜드에 옷을 싼값에 공급하고 있던 생산공장이었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사측에게서 받은 월 임금은 한화로 7만8천 원 상단에 불과했다. 반면, 방글라데시 의류업의 연간 수출액은 한화로 약 32조 원에 달했다. 이로써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또 하나의 사건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던 2022년 10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폭스콘 공장은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생산의 70퍼센트를 떠맡고 있는 애플의 OEM 업체다. 당시 정저우 폭스콘에는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다. 정저우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당국이 정저우 봉쇄정책을 펴면서 폭스콘 공장도 봉쇄되기에 이른다. 이에 20만 명이나 되는 폭스콘 노동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런 가운데 관련 정보 접근 또한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이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생산라인 가동을 강제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폭스콘 공장 내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데도 '글로벌 공급사슬'에 매여 있는 폭스콘에 아이폰 생산이 그대로 강제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대거 시위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탈출'해 귀향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관련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시위 경험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빼놓기 위해 위로금 제공과 귀향 장려를 통해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이들과 의류 공장과 스마트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반란의 매춘부: 성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118-119쪽)에서 성노동자 페미니스트 저자들인 몰리 스미스와 주노 맥은 "어떤 일을 '노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자신만의 용어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말하면서 '성노동은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곧 이 노동이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이라거나 해롭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자본주의를 옹호하려는 것도, 더 크고 수익성 있는 성산업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성노동을 노동이라고 명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들을 구제대상화하는 온정주의도 아니고 낙인과 범죄자로 만드는 성매매 범죄주의도 아닌 바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수탈과 착취 구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권리'이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이, 중국 폭스콘의 노동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페미니스트는 인간이 ‘상품’이 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238-245 쪽, 463쪽)에서 ‘상품’과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19세기에 비로소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장경제’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래 상품이 아니었던 노동·토지·화폐에 각각 임금·지대·이자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붙게 되면서 이것들은 상품이 아닌 상품, 즉, ‘상품 허구’(허구적 상품)가 되었다. ‘상품’이란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물건’을 가리키고 상품 허구는 결코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은 “사실상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 사람이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일 때에 그 사람을 부르는 기술적 용어이다.”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다. 그러므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상품이 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이) ... 거래되는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도 현실에 존재하는 수량이다.” 노동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의 실제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만약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제 및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멧돌’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경제 하에서 인간은 항상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회를 보호하려는 행위를 해왔고 이러한 행위들 덕분에 인간은 인간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시장경제의 폭거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폴라니는 결론 짓고 있다. “제아무리 노동이 상품이라고 우겨댄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본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 시장이라 해도 그 노동의 인간적 본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임금, 노동 조건, 각종 표준과 규제를 두는 한도 내에서만 작동이 허용되었다. ... 그런 장치들의 목적이란 다름 아닌 인간 노동에 관한 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붕괴시켜서 인간 노동을 시장의 궤도 안에서 빼내오는 것이니까.”

### 3. ‘평등’이 누구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성’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혹은 성을 매매하는 것은 인신매매<sup>2)</sup>와 같다고 보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자가 아니라 희생자, 피해자, 또는 구제대상자로 놓이게 되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나아지게 되는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탄의 멧돌’에 노출된 이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노동을 불법화하고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2) 인신매매는 노예제 하에서의 ‘노예 매매’와 같이 말 그대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두 사안 모두를 제대로 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들이 ‘이웃도 동료도 신념을 공유하는 모임’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모든 사회적 활동들로부터 유리되어’ 성매매업주들과의 ‘계약’에만 고스란히 묶인 채 ‘원자화되는’ 것만큼 이들에게 해롭고 위험한 상태는 없을 것이다.<sup>3)</sup>

‘서발턴(하위 주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통렬한 문제를 제기한 탈식민이론가 페미니스트 가야트리 스피박은 <다른 여러 아시아>(199쪽)에서 이렇게 말한다. “40년 이상 인문학을 가르쳐 온 선생으로서, 나는 “인신매매단에 반대하는 예술가”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실제 인신 매매자-많은 수가 여자이다-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개입은 잘 구조화된 성-노동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살아남은 여성에게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짓이다.”라고.

‘성평등’(gender equality 또는 gender equity의 한국어 용법)은 페미니즘이 태동했던 18세기 이래로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페미니즘 아젠다다. 중세의 신분제 질서가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신분질서로 부상해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의 근거가 되어 온 성이라는 신분을 폐기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은 3백 년을 넘게 주장해 온 셈이다. 그런 여성들이 스스로 어떤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평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이 ‘피해자다운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를 페미니스트들이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들은 온정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구제 대상’이 될 때에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페미니스트들이 묵과할 수 있는 것인가?

---

3) 노동에 대한 플라니의 설명을 차용한 문장이다.